

피의사실공표와 사건보도

이광재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사건보도기사라 함은 보통 사고기사와 범죄기사 등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범죄기사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범죄기사 보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가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여러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판전이나 재판도중에 피의 사실이 미디어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피의자를 범인시하여 여론을 오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피의자는 물론 사건과는 관련없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피의사실이 재판전에 보도됨으로써 그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1981년 8월에 발생한 윤노파 일가족 피살사건, 동년 9월에 발생한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 등은 아직 상급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으나 용의자들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문들은 재판전 또는 재판도중에 그들을 거의 진범으로 단정, 보도하여 피의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이밖에도 1981년 6월의 법정설주범 사건, 1979년 9월의 골동품 금당사건, 1971년 7월 D여대 메이퀸 추락변사 사건, 1970년 3월의 정인숙여인 살인사건, 1967년 10월의 김근하군 살해사건 등 헤아릴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 나라 현행 형법 제 126조, 제 127조, 형사소송법 제 198조, 가사심판법 제 8조, 사법경찰직무규칙 제 7조, 소년법 제 61조 등은 모두 피의 사실공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는 광의로는 언론의 자유, 협의로는 공공의 이익 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판결 전이라도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범죄사건을 기사화하고 있다. 미디어는 사건기사 보도에 있어서 과연 피의사실을 보도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또 피의사실을 보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등에 대한 제반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 부연해 두고자 하는 것은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이 사건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이므로 이 글의 문맥이 자연히 언론의 피의사실보도에 대한 책임쪽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II. 역사적 사건의 실례

신문은 발생 초부터 범죄기사를 기사화했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사건기사는 신문의 여러 기사중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나라 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신문이 사건보도를 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보도한 것이 크게 사회문제화 된 것은 1807 년에 발생한 미국의
버어(Burr)¹⁾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아론 버어(Aaron Burr)는 연방주의자로서
분리주의운동, 특히 서부의 여러 주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주장, 제퍼슨 정부에 의해
반역죄로 구속되었다. 그 당시 친정부신문인 웨스턴 월드(Western World), 내셔널
인텔리전서(National Intelligencer), 리치몬드 인콰이어(Richmond Inquirer) 등이 그를
재판전에 반역죄인이라고 보도하여 <신문재판>의 레예를 남기기 시작했다.

역사상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사건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 미국의 경우

(1) 로빈슨 대 제위트(Robinson v. Jewett) 살인사건 ²⁾ (1836 년)

헬렌 제위트(Helen Jewett)이란 여자는 창녀였는데, 자기 집에서 살해되었다. 젊은 점원
로빈슨(Robinson)이 혐의자로 구속되었다. 베넷트(Bennett)는 스스로 이 사건을 탐정적으로
취재했고, 용의자의 피의사실을 그의 신문 헤럴드를 통해 흥미위주로 보도하였다.
신문발행부수는 평소보다 3 배나 증가되었다. 이 신문을 뒤따라 많은 대중염가신문들도 이
사건을 오락물화했다. 그러나 재판결과 로빈슨은 무죄, 석방되었다. 이러한 취재보도태도는
1840 년대에 있었던 「도덕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신문역사상 가장 과장
보도된 사건의 하나이다.

(2) 비행가 린드버그(Lindberg)의 아들 유괴살해사건³⁾(1932 년)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여 큰 인기를 모았던 찰스 A 린드버그(Charles A. Lindberg)의 19개월 된 아들이 1932년에 유괴, 살해되었다. 1934년 브르노 홉프만(Bruno Hauptmann)이 용의자로 체포되고, 그 다음해에 재판을 받고, 1936년에 전기의자사형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한 뉴스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신문들에 사진을 곁들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공식재판전에 홉프만이 범죄인이라는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 특히 28일 동안 계속된 재판 도중에 3백명의 기자가 모여 1천 1백만 단어의 기사를 송고하여 살인사건보도의 기록을 세웠다. 이 사건은 공식재판전에 피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홉프만이 이미 여러 차례의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보도로 인해 신문들은 「신문재판」(trial by news paper)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3) 어빈 대 도드(Irvin v. Dowd)⁴⁾ 사건(1961 년)

이 사건은 재판전의 피의사실공표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이 번복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살인 피의자 레슬리 어빈(Leslie Irvin)은 1955년 4월 8일 강도와 부정수표 남발 혐의로 인디애나 주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며칠 후 에반스빌(Evansville) 경찰과 반더버그(Vanderburgh) 지역검사는 「미친개 어빈」(Mad Dog Irvin)이 1954년부터 1955년까지에 발생한 6개의 살인사건을 모두 자백했다고 기자들에게 공표했다. 어빈의 재판전에 인쇄되었거나 방송된 많은 기사들은 그를 6개 살인사건의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다. 관련검사는 훗날 미디어로부터 많은 비판 기사를 읽었다고 술회했다. 어빈은 6개의 살인사건 중 하나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55년 11월 14일 재판이 시작되어 지방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1961년 대법원은 어빈이 미디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재판지 변경을 명령하였다. 판결을 다시 반송했으나 결과는 동일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다. 그 결과 형량은 종신형이 되었다.

(4) TV 재판 : 리도우 대 루이지애나(Rideau v. Louisiani)⁵⁾ 사건(1963 년)

어빈이 신문보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면, 윌버트 리도우(Wilbert Rideau)는 TV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건의 주인공이다. 1961년초 루이지아나주 레이크·찰즈(Lake Charles)의 한 은행이 털렸다. 범인은 3명의 은행원을 납치 그 중 한 명을 살해했다. 몇 시간후 윌버트 리도우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TV는 리도우와 보안관과 더불어 20분간에 걸친 인터뷰를 녹화했다. 보안관은 죄인을 신문한 결과 리도우가 은행강도이며, 납치범이며, 살인자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필름은 그날 오후 이 지역 전역에 걸쳐 방영되었다. 3일 동안에 걸쳐 3회나 방영되었다. 15만명의 주민 중 9만 7천명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 재판결과 사건이송명령(cortidori)을 내렸다. 포터 스튜어트(Potter Stewart) 재판관은 12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재판전에 이 사건에 관련된 TV 필름을 보았고, 다른 두 명은 대리보안관이므로 리도우가 공정한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 새로운 재판을 받게 했다.

(5) 에스테스 대 텍사스(Estes v. Texas) 사건⁶⁾ (1962년)

빌리 소울 에스데스(Billie Sole Estes)는 텍사스의 금융업자로서 횡령혐의로 1962년에 구속되었다. 1962년 9월 24일 재판이 시작됐다. 이때 CBS, NBC, ABC 등 여러 TV 방송들이 이를 취재하여 전국에 방영했다. 대법원은 TV 방송으로 인해 에스데스가 공정한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클라크(Clark) 판사는 재판과정의 방영은 진실을 추구하는 법정의 엄숙함을 해치고,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넣어주고, 증인들의 증언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재판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6) 셰퍼드 대 맥스웰(Sheppard v. Maxwell) 사건⁷⁾ (1966년)

사무엘 셰퍼드(Samuel Sheppard) 박사는 오하이오 주에 사는 유복한 정형외과의사였다. 1954년 7월 4일 그의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었다. 목격자와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경찰은 얼마후 셰퍼드를 혐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방신문들은 『왜 셰퍼드를 투옥시키지 않는가?』라는 제목과 더불어 셰퍼드가 죄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TV 방송은 조사현장을 생방송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신문은 셰퍼드 부인의 피묻은 베개의 사진을 게재, 마치 외과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살해한 것처럼 보도했다. 셰퍼드는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그나 대법원은 미디어에 의한 보도와 부적합한 법적 절차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고, 1966년에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2. 한국의 경우

(1) 홍제동 한여인 피살사건⁸⁾ (1967 년)

1967 년 7 월 31 일 홍제동에 사는 한갑선 여인이 피살되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8 월 1 일자부터 취급, 용의자로 체포된 류모씨와 신모씨를 거의 진범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얼마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2) 윤노파-가족 피살사건⁹⁾. (1981 년)

윤경화 노파 일가족 3 명은 1981 년 7 월 22 일경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시체가 발견된 다음날인 동년 8 월 5 일자 석간신문부터였다. 유력한 용의자로 고모여인이 체포되었으나 재판 결과, 1, 2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으나 최근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많은 미디어들은 고모여인이 거의 진범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재판전에 이미 고모 여인을 죄인시 하였다. 이로 인해 각 미디어들은 자체 반성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3)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¹⁰⁾ (1981 년)

1981 년 9 월 18 일 여대생 박상은 양이 피살되었다. 용의자로 장모군, 정모군이 체포되었고, 정모군은 재판을 받았으나 1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문들은 재판전 그리고 재판도중에도 이들이 범인인 것처럼 보도하여 한국신문 윤리위원회는 관계 언론기관에 대해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III. 피의사실보도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9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제 16 조, 제 17 조, 제 20 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밝혀놓고 있다.

신문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법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이 피의사실을 과대하게 보도하게 될 때 피의자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재심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건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보도로 인해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는 원칙 등이 방해를 받는 일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다. 언론과 피의자(넓게는 국민 전체)는 이처럼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건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보도는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1.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보도가 문제되었을 때 미디어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은 구든지 날 때부터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의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임즈 위긴스(James R. Wiggins)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 즉 (1) 정보를 수집할 권리 (2) 사전에 억압을 받지 않고 인쇄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 (3) 부당한 보복의 위협이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 (4)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5) 위협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시민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¹¹⁾ 의미한다.

이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원への 접근권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가 정보자유법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 제 2 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동조 제 2 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 3 조는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하여 언급, 특히 제 3 항은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정보라고 해서 모두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각 법 제 9 조는 『언론은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주의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은 서로 보호되어야 한 바 양자간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이익교량의 원칙인데 이럴 경우 여기에 필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공익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인의 이이에 관한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의 적시가 공익상 유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한 것이다. 1958 년 9 월 26 일자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한 판례¹²⁾에 의하면 신문사의 지사장이 지방행정당국의 불합리한 처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곧 허위보도라 할 수 없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공중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 준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2. 명예훼손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보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피의자와 관련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근하군 유괴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범도 아닌 용의자를 『근하군 유괴진범체포』라고 보도한 신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피의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 된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을 보면 다음의 6 가지 사항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된다. 즉 (1) 악의적으로 공표된 사실진술 또는 내용 (2)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 (3) 공표된 사실이 개인으로 하여금 공중의 증오, 멸시, 모욕 또는 조롱을 받게 하는 경우 (4) 공표된 사실이 개인을 그의 사실이나 직업 능력면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5) 공표된 사실이 형사적 소추나 (6) 명예훼손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되는 경우이다¹³⁾. 또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1)

명예의 주체인 사람, 즉 피해자의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2) 행위의 공연성, 산 사람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경우 (3) 사실의 적시로써 적시된 사람의 사회적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것 (4) 사실의 적시행위로써 구두, 문서 등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 표명 (5)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한 것, 또 현실적으로 침해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것 (6) 고의성의 여부 등이다¹⁴⁾.

법률용어로서의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등 사람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해당된다. 이 평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은 이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것이므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명예의 주체가 된 바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과 같이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론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라도 사회생활상 독립한 존재가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된 바 그러나 막연한 집단, 예컨대 「서울시민」이라든가 「경기도민」이라는 정도의 것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자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은 제 33 장에 명예에 관한 죄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형법 307 조 1 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바(동조 2 항). 그러나 사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한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동법 308 조).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309 조 1 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다(동법 311 조). 이 모욕죄는 사자의 명예훼손과 같이 친고죄로 되어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반의사불처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통제를 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보의 적시가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동법 310 조)고 조각이유를 밝혀놓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세부에 있어서는 다소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이면 진실이라 할 수 있으며¹⁵⁾,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 함은 다수 일반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의미하나 반드시 사람이 공적 생활상의 사실에 한하지 않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다수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디어에 의한 사행의 폭로는 그 피해가 지대하므로 실명보다는 가명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사생활권¹⁷⁾의 침해

명예권과는 달리 사생활권은 19세기말부터 금세기 초에 확립되었다. 개념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1)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없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2) 사사로운 일을 폭로당하지 않을 권리 (3) 공중에게 왜곡당하지 않을 권리 (4) 개인의 씨명 혹은 초상이 영리적으로 도용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연의 아또」 사건판례에 따라 정의가 된 「사생활을 공연히 남에게 공개당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¹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¹⁹⁾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16조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동 실천요망 등에서 사생활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정립을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생활권은 개인의 존엄, 행복추구의 권리, 통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등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하겠다.

명예훼손과 사생활권 침해의 차이점은 (1)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지만 사생활권 침해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2) 오늘날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이 증명되면 면책사유가 되지만 사생활권침해의 경우에는 진실의 증명이 아무런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명예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시키지만 사생활권에 있어서는 법인은 그 주체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일본의 동경지방법판소는 사생활권의 침해라도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는 위법조각이유가 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1) 작품의 예술성 (2) 언론, 출판의 자유 (3) 피해자의 공적 존재성 (4)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 등이다.²⁰⁾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권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없으나, 전술한 바의 헌법(16조, 17조, 20조)과 형법(316조, 317조, 319조, 320조), 민법(750조, 751조) 등에서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다. 개인은 누구든지 다소간 일신상 또는 가정상, 기타 사회생활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함부로 폭로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생활침해되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논의되는 친고죄라는 것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1) 초상의 무단촬영보도 (2) 사진의 무단공표 (3) 개인생활의 공표 (4)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 등이다.

따라서 사건보도 특히 범죄보도에 있어서 미디어는 (1) 부녀폭행사건의 피해자의 성명 (2) 아베크 등의 피해자로서 생활권의 침해, 가정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3)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성명 등은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

4. 초상권²¹⁾의 침해

초상권은 미국법에서는 프라이버시법의 일환으로서 논의되나 서독, 이해리 등의 대륙법에서는 인격권의 문제로 이해되고 입법상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조직법 제 54 조 2 항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1973 년 제정)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 월 25 일 대법원판사회의가(법정 안에서의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면서 초상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동규칙 제 1 항은 『법원조직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또 제 2 항은 재판장을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재판장이 촬영 등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구속상태로 한 후에 한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요약하면 (1) 허가신청서의 사전제출 (2)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때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고 (4) 촬영은 개정 전에 한하고 (5)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은 수갑을 푼 후 불구속상태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언론보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초상권의 문제는 꼭 법정 안에서의 촬영 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밖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언론이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행하는 사진촬영 및 보도행위는 면책의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1) 유명인의 경우 (2)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3) 집회,

시위행열과 같은 공적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4) 예술성을 나타낼 경우 등이다. 여기서 유명인이라 함은 공직자, 성직자,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을 말한다. 그러나 초상이 상품화된든지, 광고로 이용당하든지 또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5. 공정재판권²²⁾의 침해

사람은 누구든지 공표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백한 조항은 없으나 제 26 조 1 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조 3 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동조 4 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수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법 제 15 조와 제 18 조에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언론이 범죄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을 재판 전이나 도중에 보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됨을 역사적 사건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언론이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보통 (1) 국민의 알 권리 (2) 법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감시 (3) 언론의 자유 등이다.

그러나 범죄기사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과대하게 보도하거나 기자의 느낌 또는 감정 등을 삽입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재판지 변경, 재판연기, 재판의 재판결, 배심원거부, 적법절차에 의한 호소 등을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보도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채택한 카젠바하 지침(Kazenbach Guidelines)²⁴⁾ 둘째는 신문사가 채택한 톨리도 지침(Toledo Guidelines)²⁴⁾ 셋째는 법조계서

채택한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 정책선언문(Philadelphia Bar Association Policy Statement)²⁵⁾이다.

1960 년대에 미국에서는 「신문재판」 이니 「매스미디어재판」 이니 하는 말이 자주 유행되었다. 특히 1963 년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1968 년의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상원의원의 암살사건으로 이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었다. 언론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언론계와 법조계가 열띤 논쟁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다.

카젠바하 지침은 이런 소용들이 속에서 법무성 관리들이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공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1965 년 4 월 16 일에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은 법무성의 관리들은 피의자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정보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 등 9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침은 니콜라스 카젠바하(Nicholas Katzenbach) 검찰총장이 경질된 후 1971 년 11 월 존 미켈(John Mitchell) 신임총장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다. 이 지침은 각계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미국 변호사협회는 1968 년 2 월 21 일 폴 리어돈(Paul. C. Reardon) 대법관이 마련한 4 개 항목으로 된(언론자유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채택했다. 이것을 일명 리어돈 보고서(Reardon Report)라고도 한다.

톨리도 지침은 1960 년 톨리도 브레드(Toledo Blade)지와 톨리도 타임즈(Toledo Times)가 채택했는데, 보도할 수 없는 금기사항으로 다음의 6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피기소자의 사전 범죄기록 (2) 자백 (3) 피기소자에게 불리하든지 혹은 유리한 검사의 진술 또는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과 관련된 검사의 진술 (4) 재판을 위해 선출된 배심원의 이름 (5) 배심원 부재중에 이루어진 논쟁 (6) 법정에서 거부된 증거에 대한 언급 등이다.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정책선언문은 모든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경찰서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경찰간부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의하면 범죄조사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않은 한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혐의자가 범죄를 인정했다든지 혹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단 재판 도중 경찰, 검찰, 피고인을 언론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말고, 오직 증거가 사실을 말하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126 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거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과정 전에 공표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 198 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거수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의 직무규칙도 제 7 조에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비밀의 엄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처벌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과 의사 등 전문직에 관한 조항이지 언론에 관계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언론기본법이나 한국신문윤리강령, 동실천요강 등에도 이에 대한 규정은 간접적인 주의사항이 나와 있을 뿐이고, 그 한계점은 애매하기 그지 없다.

IV. 개선방안

현재 각종 미디어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사회제도의 여러 장치의 미비, 보수적인 언론풍토, 피해를 받아도 그 권리를 보호코자 하는 시민의식의 결여, 언론인의 확고한 윤리의식의 부족 등이 그 주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보도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언론기본법, 한국신문윤리강령, 동윤리실천요강, 방송윤리규정, 방송윤리심의준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사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범법행위는 언론에 관한 특별법이 있던 없던간에 어떤 법에 의해서든 처벌을 면치 못한다.

둘째 무리한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선의의 경쟁은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의 원동력이 되지만 무리한 경쟁은 서로를 파멸로 몰고가는 원인이 된다. 보도의 신속성, 특종기사는 언론의 꽃이기는 하지만 부정확하고 허위에 가득찬 신속한 특종적인 기사는 없는 것만 못하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의 「지미의 세계」기사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세째 확고한 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기자가 과오를 범하고 부정확한 기사를 쓰게 되는 주요 원인은 태만과 무능 불성실, 편견에서 비롯된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 기자의 감정이 실린 오보적인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것을 동정하거나 질타하는 보도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우리나라 신문과 일본신문은 대부분의 경우 유죄확정판결보다는 기소기사를 더 크게 보도하고, 또 기소기사보다는 체포기사를 더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모든 것은 무죄로 추정되는 법의 정신에 의하면 윤리적인 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계정 보도기준 중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행범 또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용의자의 주소, 성명, 사진, 직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피의자를 명확한 증거없이 진범이라고 인정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3) 형사사건의 현장검증에 있어 참혹한 장면은 사진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미디어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너무 일방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좀더 투철한 책임감과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아쉽다.

넷째는 범죄기사보도의 스타일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과대한 양의 기사작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실이 추가됨으로써 기사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용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참고인, 혐의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인 등이 그것이다. 범인은 수사 당국이 범인이라고 단정, 발표할 때 비로소 사용해야 한다. 물론 현행범일 때는 예외이지만 또 범인이라고 할 때는 자백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입증될 만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명칭과 전과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미디어 자체 내에 통제장치를 설치하든지 또는 기존기구를 강화시켜야 한다. 각 미디어마다 옴부즈만(ombudsman)제도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곱째 미디어 상호간에 경험을 교류해서 기사와 인권과의 원칙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5월에 시내 몇몇 신문사 사회부장들이 모여 사건보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진일보적인 움직임의 하나라고 하겠다.

여덟째 이제 각 미디어는 법률고문을 두어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도가 자기를 강도라고 보도해도 아직은 고소를 한 예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지도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도해야 바람직한가 하는 한계를 말한 바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행 형법은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또 민법에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은 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는 그동안 사건관계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인권을 수없이 침해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1) 용의자에 불과한 사람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공개했으며 (2) 용의자 내지 무고한 사람을 진범으로 단정, 보도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진까지 공개했으며 (3) 과장보도와 오보로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한 일이 허다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의 파멸을 당했으나 이를 보상해 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 미디어가 피의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명백할 때, 미디어가 정정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기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디어는 인간의 보다는 생활영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악의 도구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행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보도한 후 발생한 제반사태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앞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언론인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 미디어 자체내의 조정장치의 설치 및 그의 강화, 세째 보수적인 언론풍토의 개선 넷째 언론인의 전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법정시비가 적었던 것은 언론활동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이 낮았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과거처럼 시대상황에 우둔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피의사실을 무절제하게 보도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각 언론기관은 기사에 대한 법정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 것이다.

(주)

1) Frank L. Mott, American Journalism(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9), p.175, 183, 199.

2) Ibid., p.233, pp.238-239.

3) ① Ibid. , 9.703,

② Harold L. Nelson and Dwight L. Teeter, Jr., Law, of Mass Communications (Mineola : The Foundation Press, Inc., 1973), pp.309-310.

4) Ibid., pp.303-307.

5) Ibid., pp.307-309.

6) Ibid., pp.310-316.

7) ① Ibid., pp.316-323.

② Melvin L. DeFleur and Everette E. Dennis, Understanding Mass Communic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pp.90-91.

8) 강수유, "사건보도와 인권", 「신문연구」, 통권 33 호 (1981 년 3 호), pp.123-125 참조.

9) ① 강수웅, 전게서, pp.127-130.

② 김창열, "인권의식과 취재의 준칙-고속종피고 무죄판결문을 읽고", 「신문과 방송」, 통권 134 호(1982 년 2 월호), pp.14-20.

③ 임두빈, "사건보도와 공공이익의 한계" 전게서, pp.22-23.

④ 김동철, "신문보도와 시민의 권익", 「언론중재」, 통권 2 호(1982 년 봄호), pp.67-68
참조

10) ① 강수웅, 전게서, pp. 130-131.

② 김동철, 전게서, pp.68-69.

③ 임두빈, 전게서. p.23 참조.

11) James R. Wiggins, Freedom or Secre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p.3-4.

12) 대법원판례 1958. 9. 26. 4291 형상 323.

13) William F. Swindler, Problems of Law in Journalism(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5) . pp.104-134.

장룡, 「언론과 인권」 (서울 : 선명문화사, 1969), p.204 에서 재인용.

14) ①황산덕, 「형법각론」, (서울 : 법문사, 1965), pp.75-79.

② 형법 제 33 장 참조.

15) 임두빈, 전게서, p.22.

16) 정영석, 「형법각론」 (서울 : 법문사, 1979), p.276.

17) 한병구. "언론과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침해", 「신문과 방송」, 통권 131 호(1981 년 11 월호), pp. 31-41 참조.

18) 在藤幸治, "명예와 프라이버시", 石村善治 · 奥平康弘편. 「알 권리」(동경 : 유비각, 1974), p.161.

19) 상동

20) 五十嵐清 · 田宮裕, 「명예와 프라이버시」(동경 : 유비각, 1979), p.21.

21) ① 「언론중재」, 통권 3 호(1982 년 여름호), 특집 1 “사진보도와 초상권”, pp.6 -46.

②) 五十嵐清 · 田宮裕, 전게서, pp.217-239.

③ 박승서 · 강수웅, "어떻게 적용되나... 법정촬영 · 중계방송규제", 「신문과 방송」, 통권 135 호 (1982 년 3 월호). pp.43-49 참조.

22) ① Harold L. Nelson and Dwight L. Teeter, Jr., op. cit, pp.276-326.

② 서정우, 차배근. 최창섭 「언론통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78), pp.123-134 참조.

23) Harold L. Nelson and Dwight L. Teeter, Jr., op. cit, pp. 276-289.

24) 서정우 · 차배근 최창섭, 전게서, p.18.

25) 상동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 저술 : 「위헌법률심사의 한계」 논문 「헌법해석과 합헌성 추정」, 「북한헌법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